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6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김기현・이달희・김상욱

인요한 • 서천호 • 서일준

박형수 · 박성훈 · 곽규택

김 건 • 박성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옹벽"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	
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	
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	
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건축법」에 따른 <u>건축물</u>	1 <u>건축물 및</u>
	<u> 옹벽</u>
2. ~ 32. (생 략)	2. ~ 3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